

#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의 권리옹호에 관한 실천적 인식연구

이세희<sup>1</sup>, 최윤영<sup>2\*</sup>

<sup>1</sup>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sup>1</sup>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팀장, <sup>2</sup>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A Study on Practical Recognition about Rights Advocacy of Social Workers in Disabled Welfare Centers

Se-Hee Lee<sup>1</sup>, Yun-young Choi<sup>2\*</sup>

<sup>1</sup>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up>1</sup>Manager, In-cheon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advocacy support team

<sup>2</sup>Professor, Division of Social Work, Baekseok University

요 약 최근 장애인복지관에서 권리옹호는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며 평가의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옹호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이 쉽지 않아 현장의 사회복지사 각자가 실천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권리옹호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 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이 권리옹호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는 것은 권리옹호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매우 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메타포 분석법을 적용하였으며, 메타포 분석은 새로운 것에 대한 구체적 설명 즉, 은유의 근거를 제공하고 이후 그것을 분석함으로써 특정한 맥락과 상황에서 개인의 인식을 살펴보는 분석방법이다. 연구결과로는 사회복지사의 권리옹호에 대한 인식이 이념형(꼭 필요한 것)과 실천형(함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리옹호가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실천적인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권리옹호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여 복지현장에서 권리옹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환경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권리옹호를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내지 실습현장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권리옹호, 장애인복지, 지역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 메타포분석

**Abstract** Recently, rights advocacy in disabled welfare center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stimation and also transition of paradigm.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fine rights advocacy specifically, so each disabled welfare center goes to conceptualize rights advocacy based on practical experiences. Study of practical recognition of the advocacy rights of social workers in disabled welfare centers provides greater foundation to establishing specific concept and direction of rights advocacy. Method of this research is analysis of metaphors, figuring out concepts and perception of social workers through survey. Analysis of metaphors is a method of analyzing a person's perception in specific context and situation by providing a concrete explanation of new thing, that is, basis of metaphor and analyzing it later.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it is shown that ideological type(necessary thing) and practical type(being together) are the perceptions about rights advocacy of social workers, and rights advocacy is recognized as ‘practical concept’ which plan and provide direct service at fields. According to these results, policy and environment should be constructed to provide advocacy services at welfare fields, reflecting these perceptions of social workers. Also this should be reflected on practical fields for them to learn appropriately and practice rights advocacy.

**Key Words** : Rights advocacy, Disabled Welfare, Community Welfare Service, Social Worker, Analysis of metaphors.

\*This work i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6S1A3A2924706)

\*Corresponding Author : Yun-young Choi( yychoi@bu.ac.kr)

Received October 4, 2018

Revised November 5, 2018

Accepted December 20, 2018

Published December 31, 2018

## 1. 서론

최근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개인의 삶에 대한 질이 강조되고 있으며[1], ‘개인의 삶’이 유지하기 위한 결정적인 요소로서 ‘권리옹호’는 장애인복지관 평가의 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는 매우 중요한 실천목적이면서 패러다임이다. 그러나 실제 ‘권리옹호팀’에서 해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 질문하면 한 마디로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보건복지부에서 권리옹호실천을 위한 매뉴얼을 보급했으나, 실제 장애인복지현장에서 권리옹호사례는 많지 않으며, 그 외에 자립지원, 의사결정 등 사례중심으로 되어있어 이념을 정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권리옹호’가 가진 다양한 범주와 의미 때문에 같은 장애인복지현장에서도 이견이 생기기도 한다. 최근 들어 권리옹호는 사회복지실천방법인가? 사례관리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실천기술인가? 장애인의 권익,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위한 사회행동인가? 혹은 기술인가? 권리옹호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현장에서 발생한 채 장애인복지관에서는 권리옹호에 대한 압박이 장애인복지관평가로 인해 더 강해지고 있다. 과연 권리옹호는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 제철웅은(2017) 권리옹호제도를 설명하면서, 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이 겪는 차별 및 장애로 인해 입는 피해에 대해 그 장애인과 함께 권리구제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하였으며, ‘장애로 인한 모든 유형의 차별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는 개인들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2]. 또한 권리옹호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재산권 침해, 유기나 방임 등의 학대, 법정에서 자신을 옹호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변호하거나, 피해 장애인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의사소통을 지원하거나, 쉬운 말과 그림으로 정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 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 다양한 차별상황을 지원하는 수단이기도 하다[3]. 이렇듯 다양한 범주에서 상황에 맞게 다른 지원을 통해 나타나는 권리옹호의 특성 때문에 지역의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오히려 권리옹호에 대한 통일된 목적이나 개념을 가지는 것이 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의 장애인 권익옹호 혹은 권리옹호 지원체계는 관련된 복지 단체나 기관중심의 지원방식으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다[4]. 따라서 한국의 장애인 권익옹호 혹은 권리옹

호 지원체계는 체계적이고 전문적 옹호, 개별적 옹호 지원을 할 수 있는 토양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5].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은 장애인들의 권리옹호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사회복지사 각자가 보수교육을 통해 혹은 기관의 목적에 따라서 권리옹호의 개념을 만들어나가는 중이다. 임성택은(2014) 장애인 인권옹호업무는 그 특성상 장애인에 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장애인권리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가까운 곳에서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밀착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6].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의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며, 따라서 권리옹호를 밀착해서 처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에게 권리옹호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는 것은 권리옹호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문제의 제기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중이다. 사업의 목적으로서의 ‘권리옹호’와 당사자에게 직접 개입해야 하는 ‘권리옹호’는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차이는 사회복지사가 생각하는 ‘권리옹호’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권리옹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2.2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권리옹호’에 인식을 알아보는 것으로 눈덩이표집방법을 이용하였으며, SNS를 기반으로 하여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자율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 2.3 연구방법

메타포 분석법은 이미 알려진 것과 새로운 것을 관련 짓도록 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구체적 설명 즉, 은유의 근거를 제공하도록 한 후 그것을 분석함으로써 특정한 맥락과 상황에서의 개인의 인식을 살펴보는 방법이다[7].

실제 메타포는 우리 일상에 널리 퍼져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관점이 되는 일상적 개념 체계의 본성 역시 근본적으로 메타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그 개념을 바탕으로 어떻게 행동하는가? 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체계가 메타포를 통해 발현된다[8]. 메타포는 ‘A는 B이다(혹은 B와 같다)’의 형식으로 구성되며[9], 본 연구를 실시하기 위한 설문도 위의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권리옹호에 대한 개념 혹은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권리옹호는 \_\_\_이다. 왜냐하면 \_\_\_이기 때문이다’ 라는 문항에 응답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메타포를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은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 116명으로 여성이 74명(63.8%), 남성이 42명(36.2%)이었다. 응답자 연령분포를 보면 중 30~40세가 68명(58.6%)으로 가장 많았고, 40~50세가 27명(23.3%), 30세 미만이 20명(17.2%), 50~60세가 1명(0.9%)순이었다. 또한 4년제 대학교 졸업이 6명(54.3%)으로 가장 많았고, 석사 졸업이 32명(27.6%), 석사 재학이 11명(9.5%), 박사과정 이상이 5명(4.3%), 전문대 졸업이 4명(4.3%)이었다.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 근무경력은 10년 이상이 42명(36.2%)으로 가장 많았고, 5~7년, 1~3년, 1년미만 근무자가 각각 16명(13.8%), 7~10년이 13명(11.2%), 3~5년 근무자가 12명(10.3%)이었다. 그리고 현재 팀원으로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가 65명(56%)으로 가장 많았고, 팀(과)장이 39명(66.3%), 사부국장(부장)이 12명(10.3%)이었다. 마지막으로 ‘권리옹호’팀은 25명(21.6%) 그 외에 사례관리팀 22명(19.0%), 지역, 재가복지팀 11명(9.5%), 주간보호 센터 2명(1.7%), 기타 52명(44.8%)였다. 기타 팀에는 기획팀, 운영팀, 치료팀 등 다양한 팀이 포함되어 있었다.

#### 3.2 권리옹호에 대한 대표메타포

권리옹호에 대한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의 116개의 메타포는 47개의 대표 메타포로 재분류하였다.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이 제시한 116개의 메타포 중 명칭과 의미가 유사한 메타포가 중첩되어 있었기 때문에 명

칭과 의미가 유사한 메타포를 묶어서 그 가운데 가장 대표성을 띄고 있는 메타포를 대표 메타포로 선정하여 Table 1과 같이 제시하였다.

Table 1. Representative Metaphors of Rights of Advocacy

	representative metaphors		Frequency
1	guardian angel	Armor, personal information, guardian angel, god, To protect what I have, Avengers, support, tree that can support me	8
2	Air	Air(3), oxygen(2), breathing, breathing	7
3	Respect	Respecting the other person's opinion, Mutual, precious us, putting on the other's shoe, Protect your self-esteem, consideration for others	7
4	together	Ganggang sullae, process of symbiosis, living together (3), help out on each other's , together,	7
5	Basic	Basic (4), Basic Life basic human rights	6
6	Interest	Interest, flowers, shoots, memories, flower beds	5
7	expression	On the way to find me, self-expression, Loudspeaker To speak out loud for yourself or someone, Helping you say and do what you want to do naturally,	5
8	a natural promise	a natural promise, get one's due restoration of dignity	4
9	practice	practice,Duty,Things to do,Act	4
10	friend	A trusted neighbor, Being a good friend(2), being on the same side	4
11	signboard	Navigation,teacher,signboard, Direction of Disabled Welfare	4
12	Daily routine		4
13	Umbrella		4
14	Key	Key (2), Smart Key	3
15	an action for me	Time for me, Activities for the parties: To enjoy my happiness	3
16	Survival	Instinct,Survival rights, ceremonial stocks	3
17	Nutritional supplements	Mineral, Nutritional supplements	2
18	Cheering	a chareleader, High Five	2
19	candlelight		2
20	water		2
21	rice		2
22	Duty		2
23	sharing		2
24	scratchback		1
25	Emergency call		1
26	sweet potato and cider		1
27	expression of sympathy		1

28	Is this really important?	1
29	flower	1
30	Yeast	1
31	versatility	1
32	Question mark	1
33	It's like pouring water in a sieve	1
34	sea	1
35	Boomerang	1
36	Humanity	1
37	love	1
38	communication	1
39	It's like scratching the surface.	1
40	meal	1
41	Sinkhole	1
42	Americano	1
43	Glasses	1
44	A double-edged sword	1
45	Self-development	1
46	independent living	1
47	a free lawyer for the disabled	1

본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은 ‘권리 옹호’를 수호천사(n=8, 6.8%), 공기, 존중, 함께하는 것(각각 n=7, 6.0%), 기본(n=6, 5.1%), 관심, 표현하는 것(각각 n=5, 4.3%), 당연한 것, 실천, 친구, 이정표, 일상, 우산(각각 n=4, 3.4%) 등으로 표현하였다.

### 3.3 권리옹호메타포 범주분석

권리옹호에 대해 사회복지사들이 제시한 47개의 대표 메타포는 메타포 자체가 지니는 특성 분석을 거친 후 Table 2와 같이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권리옹호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메타포의 범주를 분류하였다. 그 결과 2가지 범주와 4가지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지켜주는 것, 꼭 필요한 것, 함께 하는 것, 실천해야 하는 것, 알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Table 2. Categorization of Metaphors of Rights Advocacy

category		metaphors
ideological type	must-have (30)	Basic rights, Personal information, air(3), Duty Basic (4), flower, a natural promise(3), water(2), Rice(3), Instinct, Basic rights, Oxygen(2), Ensuring survival, Things to do Breath(2), Daily routine, ceremonial stocks, The direction of the welfare of the disabled, The restoration of dignity,

	Guardian (36)	the umbrella(4), Daily Life(2), flower, sprout god, Nutritional supplements, signboard, to speak out loud for someone, teacher, to preserve self-esteem, The Avengers, Support, independent-living, Cheerleader, time for me, Respect, Mineral, a flower bed, memory, Humanity, Emergency call, love, attention, Navigation, Armor, a tree that can support, to enjoy my happiness, free lawyer for disabled people, a guardian angel, Precious us To protect what I have, Respecting the other person's opinion,
practical type	being together (22)	High Five, Ganggangsulae, The process of symbiosis, versatile, A person who goes with you(2), A trusted neighbor, Mutual, Candles(2), putting on the other's shoe Communication, Duty, Being a good friend, friend, Consideration for others. Being on the same side, help out on each other's Living together (4)
	what needs to be done (20)	practice, sweet potato and cider, Boomerang, Emotional expression, Yeast, key(2),Americano Activities for the parties, meal, Glasses, Duty On the way to find me, Daily routine, Actions Self-development, Expressing yourself, To help you talk and do things naturally. Loudspeaker, scratchback
	an unknown thing(8)	sea, It's like scratching the surface. Sinkhole, A double-edged sword Is this really important?, Question mark It's like pouring water in a sieve Glasses

첫째, 장애인복지관에서 권리옹호는 ‘꼭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공기, 본능, 생존권 보장’과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없으면 살 수 없고’, ‘모든 인간에게 타고난 것이며’, 그렇기에 ‘일상생활에서부터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까지 개입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공기 : 공기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 본능 :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생존권 보장 : 권리옹호는 자기결정권을 끌어내게 조력하는 것으로써 사소한 일상생활에서의 옹호부터 정말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권리옹호를 ‘꼭 필요한 것’으로 보는 입장을 보면, 흡사 ‘인권’과 유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인권은 사람이 “사람(person)”이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권리(inalienable rights)”를 말하며, 인권의 개념은 (1)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가리키는 자유권과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가리키는 사회권으로 성립된다[10]. 권리옹호에서 인권은 빼놓을 수 없는 개념

이기는 하나, 자칫 권리옹호가 ‘인권’과 동의어가 되어서는 권리옹호 실천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권리옹호는 ‘지켜주는 것’으로서 ‘우산’처럼 혹은 ‘어벤져스’나 ‘수호천사’와 같이 당사자를 지켜주기도 하고, ‘네이게이션’처럼 방향을 알려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우산 : 내리는 비를 막아주듯이 인권침해를 막아줄 수 있는 방패이기 때문이다
- 어벤져스 :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이다
- 네이게이션 : 자신의 삶에 대해 혹은 인생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헤매이고 있을 때 원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복지사들은 권리옹호를 ‘함께하는 것’, ‘함께 사는 것’, ‘동행’, ‘촛불’ 등 함께 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조직의 영향을 받는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조직이 아픔과 치유가 공존하는 장소이면서 캠페션과 돌봄을 서로 주고받는 공간[11]에서 당사자 및 다른 기관과 함께 업무를 수행해온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함께 :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지역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 촛불 : 권리옹호라는 촛불이 장애인, 가족, 지역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어두웠던 길을 조금씩 밝혀줄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서 권리옹호는 ‘열쇠’의 역할을 하며 ‘행위’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실천 : 이론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 행위 : 말만하고 이론만 알고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 행동해야 비로소 권리가 그리고 자신이 주변이 바뀐다
- 열쇠 : 어떤사람을 조력자로 만나느냐에 따라 권익이 옹호되기도 침해되기도 하니까

마지막으로 ‘알 수 없는 것’으로 범주화하였는데, 권리옹호와 관련된 업무를 하면 할수록 ‘바다’ 혹은 ‘싱크홀’에서 ‘수박 걸 할기’ 같은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과연 이게 중요한 것이 맞는지’ 고민을 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많은 수는 아니었으나, 경력 이 짧은 경우와 많은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 ‘권리옹호’ 업무를 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딜레마를 겪으며 경험하게 된 후, 혹은 ‘권리옹호’를 처음 하게 되면서 권리옹호라는 넓은 범위의 업무를 대한 사회복지사의 경험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싱크홀** : 무분별한 법, 제도, 현실 사회적 장벽 등 불안한 상황들속에 늘 상주해 있기
- 수박걸 할기** : 왜냐하면 실제 열매는(당사자)는 찾지 못하고 열매를 싸고있는(보호자와 관계자 등)결만 바라 보고 있기 때문이다
- 과연 이게 중요한 것이 맞나**: 복지관이나 여러 기관의 실질적인 사업의 한 부분으로 구분하기에는 너무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경수(2008)는 변화하는 패러다임 안에서 사회복지사가 ‘고강도의 전문적 훈련을 받는 전문직을 고수해야 할지, 혹은 장애인을 관리하는 국가의 대리인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옹호할 것인지, 그러나 옹호자로 남을 때 과연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등 그 역할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고 하였다[12]. 위의 메타포들은 이러한 혼란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겠다.

Table 3. Type of the Metaphor of Rights Advocacy

		Type		
		Ideological type	Practical type	
Position	the director of the office	8	4	$\chi^2=19.85$ $df=2$ $p=.000$
	Team leader	11	28	
	team member	47	18	
academic background	College Graduate	40	27	$\chi^2=2.785$ $df=5$ $p=.733$
	master's course	7	4	
	graduate degree	16	16	
	Ph.D.	2	3	
Tenure	etc	1	0	$\chi^2=18.60$ $df=5$ $p=.002$
	under 1 years	13	3	
	1~3 years	11	5	
	3~5 years	9	3	
	5~7 years	12	4	
	7~10 years	6	7	
over 10 years	14	28		

Table 3 에서 제시한 5개의 범주를 2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념형’은 권리옹호를 ‘꼭 필요한 것, 지켜주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실천형’은 권리옹호를 ‘함께하는 것, 실천해야 하는 것, 알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이다. 위의 분석결과를 보면 직위와 기간(경력)에 따라 ‘실천형’과 ‘이념형’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먼저 ‘팀원, 사무국장·부장’과 ‘7년 미만’ 근무자는 ‘이념형’이 많았고, ‘팀장’과 ‘7년이상’ 근무자는 ‘실천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결론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게 ‘권리옹호’에 대한 메타포를 분석한 결과 이념형(꼭 필요한 것, 지켜주는 것)과 실천형(함께하는 것, 실천해야 하는 것,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팀장과 7년차이상의 경력자는 실천형이, 팀원, 사무국장 이상의 관리직과 7년 미만의 경력자는 이념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팀장과 7년이상의 경력자는 복지관 내에서 권리옹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권리옹호가 필요한 당사자 혹은 단체와 직접 접촉하며 상황을 조정하고, 기관의 협력을 끌어내기도 하는 등의 역할을 할 것이다. 7년 미만의 경력자인 경우 팀장의 지시 아래 주어진 역할을 하며 장애인의 권리옹호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고, 그 안에서 지식을 축적해나가는 과정일 것이다. 사무국장 이상의 관리직일 경우 7년이상의 경력자일 수 있겠으나, 장애인관 관련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옹호에 대한 당위성 혹은 현재 기관의 목적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이념형이 높게 나왔을 것으로 판단된다. 권리옹호가 장애인복지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실천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사회복지서비스 현장에서 권익옹호를 스스로 주장하기에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움직이는 권리옹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권리옹호를 위한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천적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표현하듯, 많은 어려움 속에서 각자의 길을 찾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권리옹호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여 권리옹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대로된

환경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권리옹호를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에 혹은 실습현장에 반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덧붙여 학생들에게 교육자의 이념과 사상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고려하여 교수 대상의 장애인 인식교육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13].

#### REFERENCES

- [1] J. E. Shin & Y. H. Song. (2017). The Cognition of Job Importance and Educational Needs according to Workers of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Small and Medium-sized Organization) in Gyeonggi.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7), 151-157.
- [2] C. U. Je. (2015). Legislative Task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Chonbuk Law Review*, 44, 153-182.
- [3] J. K. Seo, C. U. Je & Y. Y. Choi. (2016). The Issue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a Protection and Advocacy Syste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Korea: Focused on the Background and History of the relevant Discussions.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32, 141-170.
- [4] Y. D. Kim & M. Y. Kim & J. K. Seo & J. E. Jang & S. G. Park. (2014). *Development of the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Rights Advocacy at the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s*. Seoul: EM Community.
- [5] J. K. Seo, C. U. Je. & Y. Y. Choi. (2016). The Issue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a Protection and Advocacy Syste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Korea: Focused on the Background and History of the relevant Discussions.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32, 141-170.
- [6] S. T. Yim. (2014). A Study on the Protection and Advocacy System of the Severely Disabled People. *Policy Discussion to Establish the System of Protection and Advocacy for the Disabled*, 23-46.
- [7] B. S. Seo, J. K. Park. & L. E. Park. (2014). Metaphor Analysis of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Workers Concerning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15(3), 191-214.
- [8] J. I. Lee & H. A. Seo. (2016). A Study on the Awareness of Mothers with Preschoolers about Autonomous Maternal Attitude by Metaphor Analysis.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17(2), 275-300.

- [9] K. M. Kim. (2015). Prospective Pre-school Teachers' Perceptions of Children with Disability and Early Special Education: A Study of Metaphor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50(3), 121-141.
- [10] K. H. Jun. (2018). Population Policy in Korea-a Human-Rights Perspective-.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41(2), 1-30.
- [11] S. H. Ko. (2018) The Effects of Compassion experienced by Social Workers on Collective Self-Esteem : Mediating Effect of Positive Work-Related Identity and Moder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0), 179-185.
- [12] K. S. Park. (2008). The Study on the Role Orientation of Social Work Professional in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2(2), 19-45.
- [13] Y. M. Jeon & H. W. Lee. (2017). A Survey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Recognition for The Disabled - Focusing on Universities in Chungcheong Provinc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5), 1-13.

이 세 희(Lee, Se Hee)

[정회원]



- 2003년 2월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2006년 2월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15년 6월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08년 ~ 현재 :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근무
- 관심분야 : 사회복지, 권리옹호
- E-Mail : lshe5@nate.com

최 윤 영(Choi, Yun-young)

[정회원]



- 1994년 2월 :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문학사)
- 1996년 8월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 2002년 2월 : 독 브레멘대학교 장애인복지(Diplom 석사)

- 2005년 4월 : 독 브레멘대학교 장애인복지(Dr.phil. 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장애인복지, 권리옹호, 성년후견제
- E-Mail : yychoi@bu.ac.kr